

제1장 계 획 의 개 요

1.1 계 획 의 배경 및 목적

1.2 계 획 의 범위

1.3 계 획 의 법적근거

1.4 계 획수행 절차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계획의 배경

가. 계획의 배경

-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며,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현재 정착단계에 이르는 시점이지만, 여객시설·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동편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 역할 재정립과 새로운 정책수립 요구가 증대됨으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 이러한 사유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2010.6)을 통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차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표1-1> 교통약자 용어정의(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교통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영유아(0~4세), 어린이(5~9세), 고령자(65세이상) 제외) - 고령자 : 65세이상 - 어린이 : 5 ~ 9세 - 영·유아 : 0 ~ 4세 - 임산부
이동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 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단 :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수단(버스, 도시철도, 철도, 특별교통수단 등) ※ 특별교통수단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 여객시설 :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 정류장 등) - 도로시설 : 도로와 그 외의 준용도로(보도, 육교, 지하보도, 장애인주차구역 등)

나. 수립경위

- 2005. 1. 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2006. 1. 28.부터 시행)
- 2006. 1. 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2007. 4. 제1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07-'11년) 수립
- 2008. 8. 제1차 동두천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08-'12년) 수립
- 2012. 3. 제2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12-'16년) 수립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 수행주체 : 국토해양부장관
 - 교통약자의 이동동선을 고려한 실질적인 이동편의 증진계획
- 지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의무화(법 제7조)

1.1.2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동두천 교통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동두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동두천의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실태의 조사분석을 통해 향후 4년간 실행가능한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대중교통에 관한 개선대책 및 계획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 따라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교통안전을 고려한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여 선진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1.2 계획의 범위

1.2.1 공간적 범위

- 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동두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2.2 시간적 범위

- 본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수립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국토해양부, 2012.3」의 목표연도를 수용하여 최종목표연도를 2016년으로 설정하였다.

<표1-2> 시간적 범위



1.2.3 내용적 범위

- 본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요령, 2007. 4, 건설교통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1-3> 내용적 범위

구	분	내 용	비 고
1.	계획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범위 • 계획수행 절차 	
2.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관련계획 검토 •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전망 	
3.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편의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 교통약자 이동·거주 실태조사 • 보행환경 실태조사 • 교통약자 이동관련 문제점 	
4.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 계획의 지표 및 목표치 설정 	
5.	세부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및 개선전략 • 보행환경 개선 • 저상버스 도입방안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 •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방안 •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방안 • 홍보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6.	소요자원 및 조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재원의 규모 및 투자계획 • 자원조달 방안 	

1.3 계획의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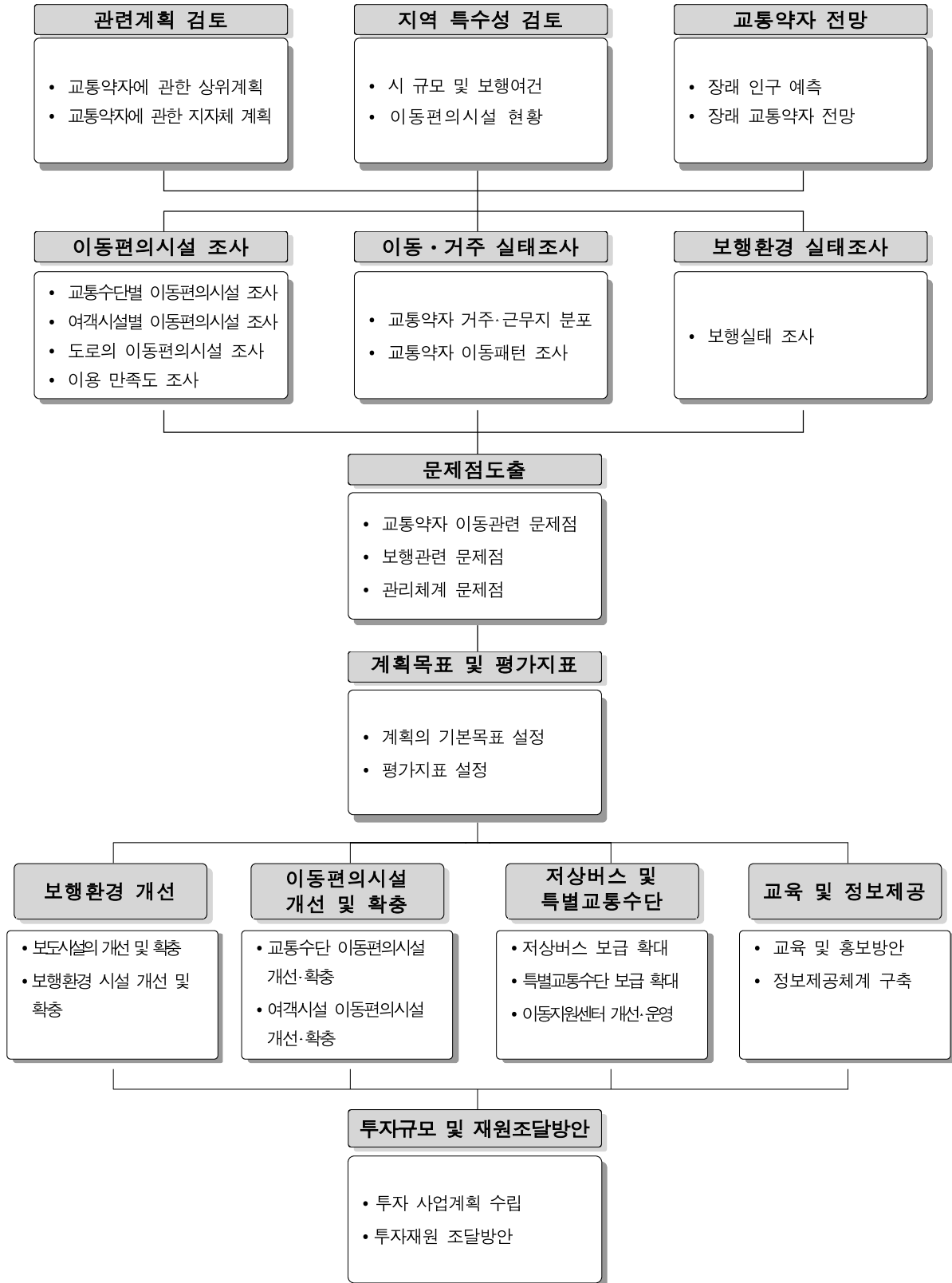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요구에 따라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공포되고 이듬해인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동두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표1-4>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구 분	법 적 근 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10. 6)」	비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제6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제7조(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이나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⑧ 시장이나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⑩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 계획수행 절차

1.4.1 계획수행 절차



<그림 1-1> 계획수행 절차

1.4.2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절차

절차	내 용	비 고
기본계획수립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법 제7조제1항) 	-
↓		
협의·의견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 (법 제 7조제3항) •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제출된 의견서의 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시행령 제7조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청취를 위해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2이상 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 이 열람 (시행령 7조 1항)
↓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법 7조 5항)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입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법 7조 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안 제출 시 첨부서류 (시행령 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결과 -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법 7 조 6항) 	-
↓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을 변경 (법 7조 8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7조 9항) •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 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이하, 계산착오·오기·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령 5조)
↓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제시의견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 (법 7조 7항) 	-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매년1월말까지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 (법 8조 1항, 시행령 10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실적 매년 1월말 제출(시행령 10조 2항,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 국토해양부장관 - 시장 또는 군수 : 도지사(도지사는 취합하여 매년 2월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그림1-2>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절차